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정을호·김준혁·복기왕

서삼석 • 추미애 • 강유정

문금주 • 이기헌 • 박홍근

안도걸 • 백승아 • 김한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등 살포로 언제든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큼.

이에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, 이로 인하여 시설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 의3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호나목 중 "충돌 등으로"를 "충돌,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 등으로"로 한다.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3(특별복구비 등 지원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재난 중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복구비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복구비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 24년 5월 28일 이후 발생한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피해를 입

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 1. ------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가. (현행과 같음) 가. (생략) 나. -----나. 사회재난: 화재・붕괴・ 폭발 · 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 ·화생방사고 · 환경오염사 고・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 축전염병예방법 |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

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 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 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의 추락・<u>충돌 등으로</u> 인 한 피해

2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충돌,</u> 북한의 도발
<u>또는 위협 등으로</u>
2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65조의3(특별복구비 등 지원
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는 사회재난 중 북한의 도발
또는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시
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재산
<u>상의 손실에 대해서 특별복구</u>
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
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
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
 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복구비
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